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전략

2017. 03.08

류 태 규 연구본부장



목차

- 1 4차 산업혁명시대의 우리의 대응 현황
- 2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해외 각국의 정책대응현황
- 3 지식재산의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긍정 및 부정적 영향
- 4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연구개발 정책 방향성
- 5 유망 IP 창출을 위한 국가 R&D 사업 관리체계 개선
- 6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생태계 및 거버넌스
- 7 AI 창작물 등 새로운 유형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 8 빅데이터등 대량으로 생성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 9 3D 프린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쟁점과 보호
- 10 블록체인 기술 등 『특허+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 11 해외 위조·복제 상품에 대한 감시감독 이슈

4차 산업혁명시대의 우리의 대응 현황

중요성은 인식, 정부의 산발적 대응과 민간의 적극적 의지 부족

최근 불안한 국내외 정세에 따른 정부의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부족,
 개척자·선도자보다는 추격자의 위치에 익숙해져 있는 민간의 적극적 대응의지와 투자 부족
 → 단기 성과와 수익에 집착하여 기초과학 투자, 중장기 투자 부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한 기업은 전체의 3.6%에 불과 (산업연구원)

정부의 대응

전자신문 etnews [4차 산업혁명, R&D가 성패 가른다] SW·서비스 등
 Keit 무형산업 투자 늘려야

아주경제 단독[4차 산업혁명 본격화] 정부,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 8대 유망직종 선정...올해 3개 직종 인재
 양성 '스타트'

전자신문 etnews CPS·스마트센서 표준화 등 8대 스마트 제조기술, 구
 체적 과제로 잡혔다

n 내일신문 특허청,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방안 내놓는다

업무계획 발표, 융·복합 특허 협의심사 도입

2017-01-24 11:05:37 게재

특허청은 24일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한국기업이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세계시장
 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인식과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국내 기업들 현주소 (단위=%) *자료=산업연구원

대응 수준



얼마나 알고 있나



위기의 원인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진 이유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해외 각국의 정책대응현황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 현황>

구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주요 정부정책	-NNMI 네트워크 -NITRD -브레인 이니셔티브	-하이테크전략 2020 -인더스트리 4.0	-일본재흥전략 2015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5 -로봇 신전략	-중국 제조 2025 -중국 인터넷 플러스
핵심기술	사이버물리시스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공학, 클라우드 등			
주요 추진조직	-정부기관 -글로벌 제조기업 -글로벌 IT기업	-정부기관 -글로벌 제조기업 -글로벌 IT기업	-정부기관 -글로벌 제조기업	-정부기관
대응 방향	-제조업 중심의 정책방향 설계 -자국 내 글로벌 IT 기업의 적극적 참여 -민간중심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	-제조업 중심의 정책방향 설계 -자동차, 기계설비 등 자국 글로벌기업 중심으로 추진 -국가 차원의 아젠다 제시와 함께 민관의 공동대응	-아젠다 중심의 정부 대응전략 추진 -기존에 강점을 가진 로봇기술 중심 전략	-정부중심의 강력한 정책 추진 -기존 제조업의 주요 발전 수단으로 ICT기술을 활용 -자국 시장규모 적극 활용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전자신문,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세계 주요국 지식재산 대응전략(2017.1.4)

지식재산의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긍정 및 부정적 영향

특허분쟁(국제)

- 국내기업의 글로벌 특허소송은 2004년 37건에서 2011년 159건으로 증가
 - 국내 IT분야 대기업 삼성(43건, 1위), LG(31건, 2위), 팬택(11건, 3위), SK하이닉스(7건, 4위) 등
- 특허권 보유자의 패소율 75%
- 소송기간 평균 2년 이상, 소송비용 평균 2~5백만불
- 평균 침해액 1.8백 만불에서 15.6백 만불 (1995-2010)
- 쌍방합의보다 판결에 의해 종료, 분쟁이 장기화 및 격화되는 경향

긍정적 기능

- 제약산업과 같이 다음의 특성을 가진 산업에는 특허권은 기술혁신의 순기능
 - 혁신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을 때
 - 혁신의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 때
 - 생산비용(가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법적 경쟁우위 확정성
분쟁 등 사회경제적 비용상승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의 걸림돌
지식재산집약산업의 약진

부정적 기능

- 특허출원을 늘어났으나, 상대적으로 특허의 질적 악화
 - IT 기술분야의 특허덤블로 인해 혁신의 걸림돌 작용
- BT분야의 연구도구특허 등은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 가능
- 높은 특허 무효화율로 인한 권리의 불확정성

지식재산 집약산업(미국)

- 총 313개 산업 중, 75개 산업이 IP 집약산업으로 분류
- 미국 GDP의 34.8%, 상품수출의 60.7%를 차지 (2010)
- 지식재산집약산업은 직접적으로 미국 전체 고용효과 18.8% 를 차지
 - 상표집약산업(60개)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미국 전체 고용의 24.7%를 차지
- 지식재산집약산업의 종사자 평균임금은 전체 평균임금에 비해 42% 더 높음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연구개발 정책 방향성

정부의 종합적/중장기 지원정책, 민간의 선도적 개척의지 필요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방향성

연구개발 기획

- 중장기 기초연구개발 투자 확대
- 융합연구/실증연구 과제 확대
- 4차 산업 핵심 기술선점을 위한 R&D 투자 기획연구 확대개편
(지식재산 선점과 개발 기획강화)

연구개발 관리

- 연구자 · 평가자 책임이력제 도입
- R&D 공급자 · 관리자가 아닌 수요자 · 개발자 중심의 운영
- 지식재산 관리 강화
(주기적 모니터링 → 대응 전략)

연구개발 성과확산

- SCI보다는 지식재산권 중심, 양적 성과 보다는 질적 성과 중심
- 이전 건수보다는 대형 기술이전과 확산성과의 추적 평가
- 정부보다 민간 중심의 이전 · 확산

클라우드 슈밥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제도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승자의 조건으로,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 혁신이 생겨나고 부(富)가 창출될 것"
(World Economic Forum, '16.1)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다양한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지식재산권 관점의 다각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 모색이 필요

유망 IP 창출을 위한 국가 R&D 사업 관리체계 개선

우수한 기술 = 우수한 지식재산 ?

[명제] 우수한 기술이 있으면 좋은 지식재산을 만들 수 있다 → “참”

[명제]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좋은 지식재산을 만들 수 있다 → “거짓”

All Elements Rule : 모든 구성요소를 다 포함해야 침해!!!

구성요소 : $A + B + C + D + E +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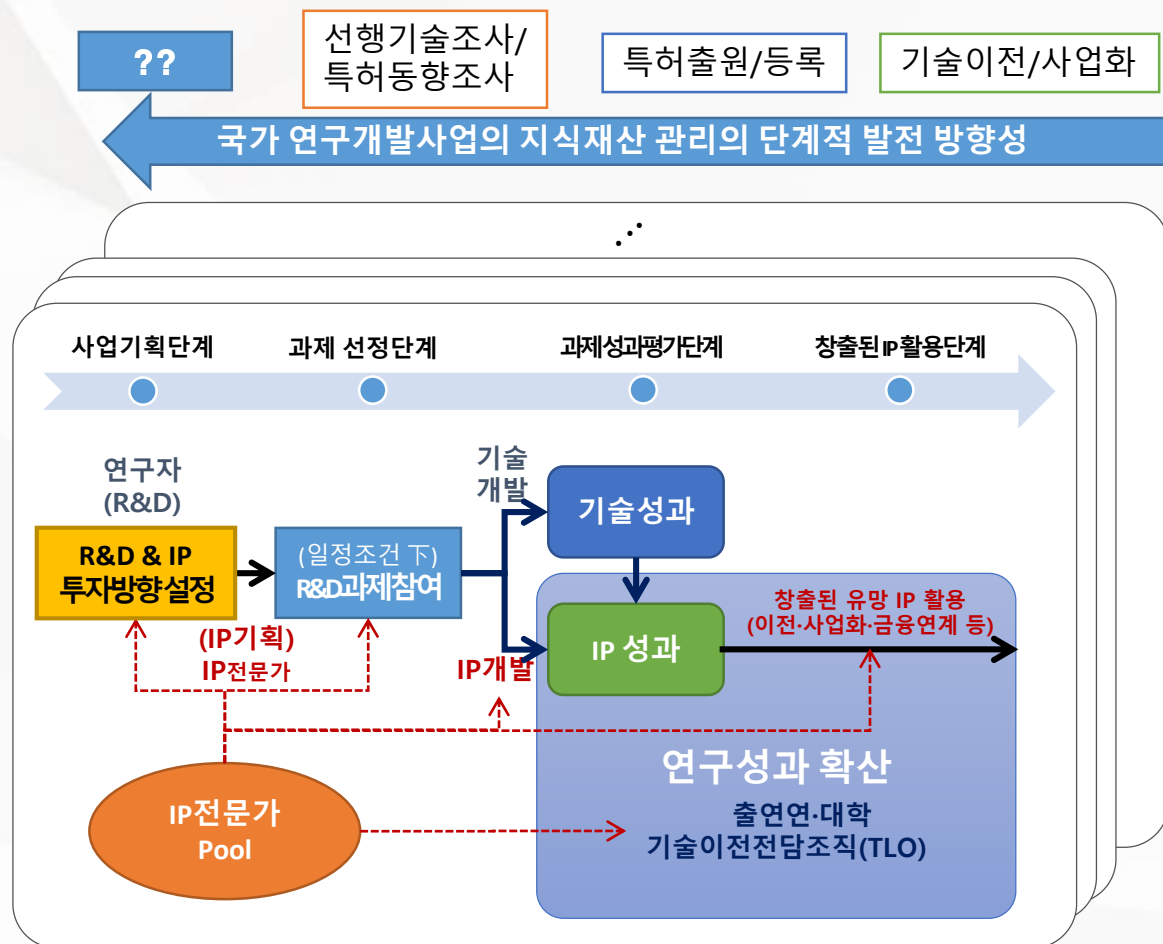
핵심 구성요소

- 강한 특허 : A, B 청구항으로만 구성 / 약한 특허 : A, B 이외의 청구항 보유
- A 기술만 개발 → B 기술 추가 개발 특허출원 및 병합
- B와 유사한 B' 기술이 있다면, 신규성 및 진보성 확보를 위한 회피설계 필요

어떻게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해 낼 것인가?

→ 연구자 ? 또는 변리사?

유망 IP 창출을 위한 국가 R&D 사업 관리체계 개선



R&D-IP 기획

- 고품질의 특허를 가장 효율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개발 관리와 별도의 「기획→관리→획득」 과정이 필요함
- (현재까지의 시스템)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춘 기획 및 관리시스템은 기술개발의 결과의 하나로써, 특허를 획득하는 시스템
- (현재의 방향성) R&D 투자방향성 설정 후, 고품질의 IP 개발을 위한 「기획→관리→획득」 방향으로 진화
- (한계) AI, IoT, 빅데이터 등 관련기술 선진국의 연구방향을 쫓는 형상으로 요소·병목기술의 “선점”이나 R&D의 “상대적 경쟁우위”에 대한 고려 부족
- (개선방향) 기술·시장·특허·연구성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투자 및 방향성 설정을 위한 사업에 충분한 분석과 투자 필요
- 이를 위한, 국가R&D의 지식재산분야
①조사·분석체계, ②「기술-시장-R&D-IP」 연계정보 분석체계, ③ 성과평가와 그 분석체계, ④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의 협력적 정책 생태계 마련이 필요

유망 IP 창출을 위한 국가 R&D 사업 관리체계 개선

기본 역량

- 시장과 (특허)기술의 동향파악 능력
- 전공 또는 관련 기술분야의 이해능력
- 연구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대상 인력

- 연구개발 고경력자
-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 전략 고경력자
- 고경력 변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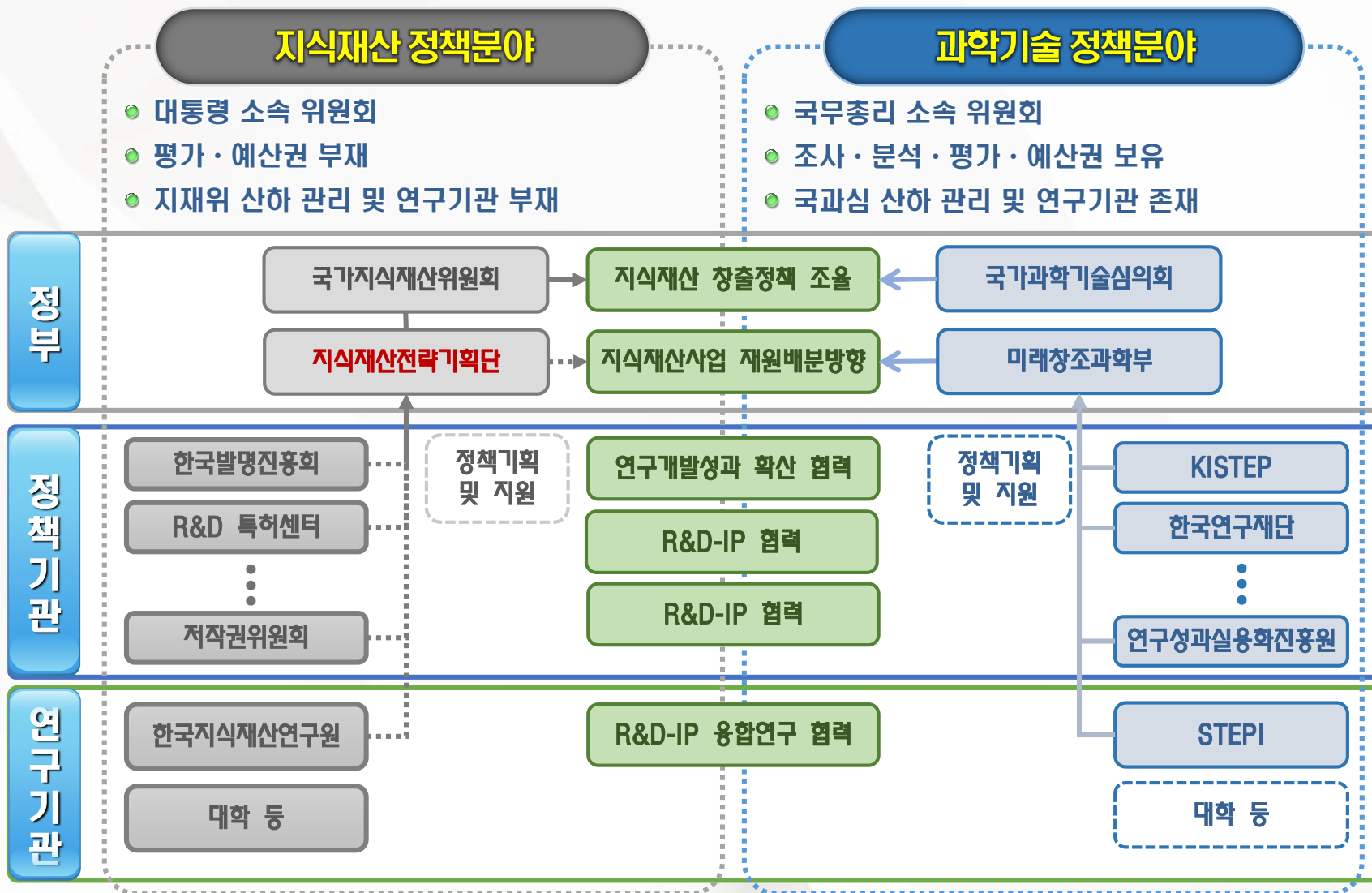
보수 교육

- 기본역량을 갖춘 대상인력 보수교육 및 이수자에 ‘(가칭) IP Specialist’ 자격부여
- 선임자와 이수자가 2인 1조가 되어 국가 R&D 과제에 참여, 도제식 실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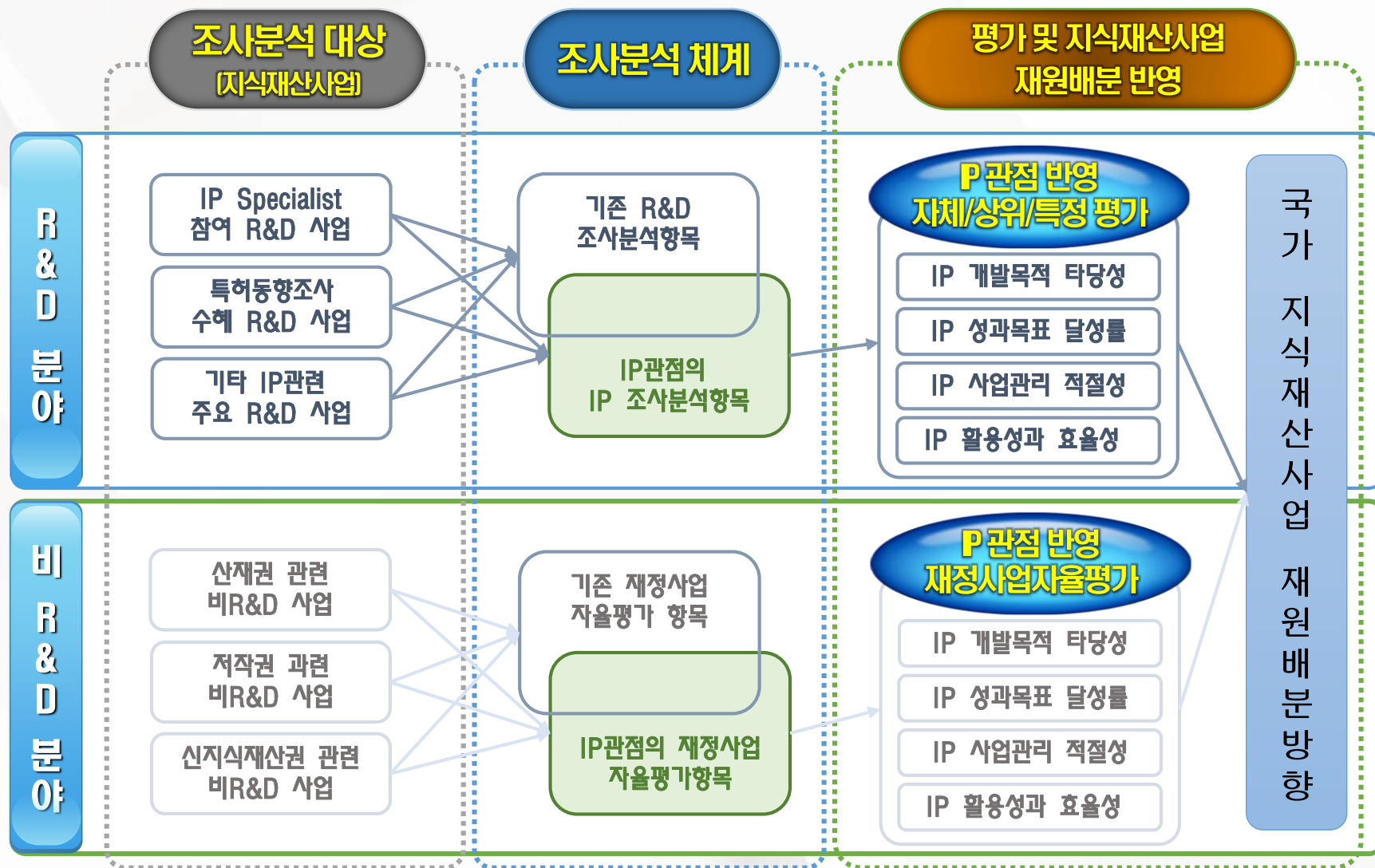
IP Specialist의 국가 R&D 과제 참여 관련 제도 개선

- 일정 조건의 국가 R&D 과제에 대하여, IP Specialist가 참여토록 제도적 의무화
 - 일정조건 : 과제의 단계, 규모, 목적 등 IP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
 - IP Specialist는 개별과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 과제선정 후 적절한 외부인건비와 직접비의 연구비 계상 제도 마련
- IP Specialist가 참여한 과제에 대하여,
 - 지식재산관점에서 연구관리 및 평가 가능토록 별도 프로세스 마련 및 과제로부터 창출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적 평가 실시
 - 지식재산사업으로 분류하여, 조사분석 및 평가 실시 후 예산배분에 반영
- IP Specialist
 - 과제 종료 후,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참여한 과제의 지재권 누적 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등에 의해 IP Specialist의 실적관리 및 승진 등 인사관리
 - 실적에 따른 직급에 따라 인건비 단가와 성과급, 과제 참여시 우선순위 및 선정 시 가점 등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생태계 및 거버넌스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생태계 및 거버넌스



[참고]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적 거버넌스

(1안) 지식재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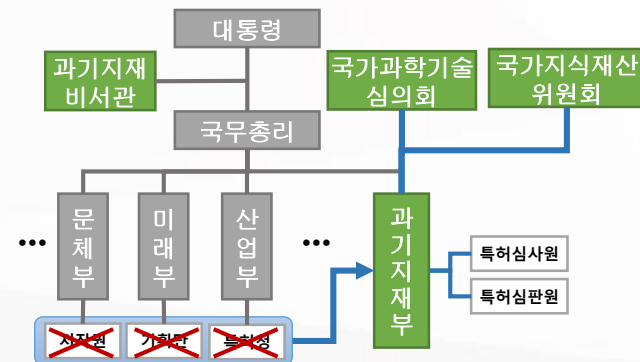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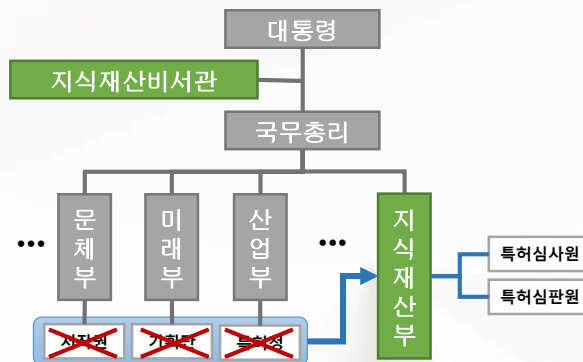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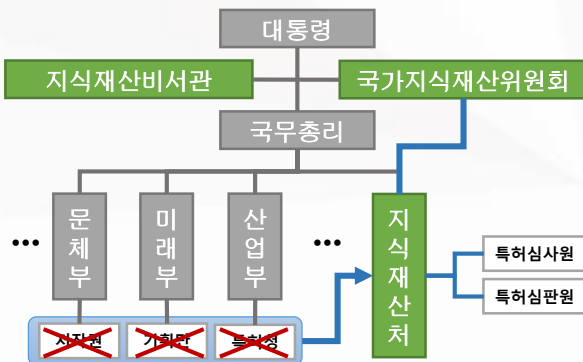
- 지식재산정책 조정기능 중심
- 조정정책 실무 : 지식재산처
조정기능 강화 : 비서관
정책 의결 · 집행 강화 : 위원회
- (장점)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 가능, 각 부처 지식재산 관련기능의 조정 및 통일적 집행 가능
- (단점) 정책 및 조정 기능과 집행기능의 괴리로 인한 비효율 가능성 존재

(2안) 지식재산부

- 지식재산정책 강력한 추진 가능
- 모든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집중
정책 집행조정기능 강화 : 비서관
- (장점)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 가능, 지식재산관련 정책이 국가상위정책으로 격상
- (단점) 지식재산 집행기능의 비효율 가능성 존재, 국가 지식재산 관련 기능이 부 단위 수준인가에 대한 합의 필요

(3안) 과기지재부

- 지식재산정책 일부의 집행 및 조정기능 중심, 모든 정책기능과 중요집행기능의 집중
- 정책 집행조정기능 강화 : 비서관
- (장점) (1안)의 장점과 함께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정책의 협력적 추진으로 국가 R&D 효율성 증대
- (단점) 정책 및 조정 기능과 집행기능의 괴리로 인한 비효율 가능성 존재, 지식재산 정책기능의 상대적 축소 가능성 존재



AI 창작물 등 새로운 유형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AI 창작물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 발생

기존의 지식재산권법

저작권법

과학기술"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2조 제2호)

특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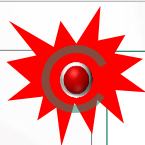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제1항)



AI
창작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법 체계는 인간행위를 전제로 법률관계를 설정, AI에 의한 창작물 등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AI의 대중화 및 실용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점의 다각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 모색

AI 창작물 등 새로운 유형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해외 국가 동향



지식재산권법적 보호를 위한 적극적 검토

- 차세대 지식재산시스템 검토위원회 보고서(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報告書) 발표('16.4.), 2016년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 2016) 발표('16.5.)
-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할 경우 그 부작용을 감안하여 보호의 범위와 수준, 기간 등을 낮게 설정할 것을 제시



권리귀속에 대한 논쟁이 진행중

- AI에 의한 창작 또는 발명에 대한 권리가 어디에 귀속되느냐를 놓고 논쟁이 진행 중
- 발명의 경우 자연인에 귀속된다는 법령이 있으나, 기계에 해당하는 AI가 만들어내는 저작물에 대해 법적인 해석이 현재는 없는 상태

9

향후 논의 방향

1 법적 보호 여부 및 보호 범위와 수준의 정도

2 권리 귀속의 주체 판단의 문제

3 침해 책임 귀속과 구제 방안에 대한 검토

빅데이터등 대량으로 생성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지재산권

지재산권 침해 없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논의 필요

IoT, 센서 등에 의해 대용량의 정보를 생성·수집하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주목 받고 있으나 근간이 되는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는 무임승차 및 저작물의 권리침해와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문제 발생

국내 현황

• [빅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여부]

빅데이터는 편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데이터베이스로 대체적으로 인정(저작권법 제2조제19호)

• [저작권 침해 가능성]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시, 저작권자의 이용동의 없이 진행되어 저작권 침해 가능성 높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의 발생 가능성 상존

• [저작권적 측면의 논의 미비]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의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저작권 관점에서의 논의는 아직 미흡

해외 현황



2016년 빅데이터를 유형별로 나누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논의

- 저작권법 제47조 7의 신설을 통해 정보해석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저작물의 복제·번안을 할 수 있는 제한규정 도입



공정이용 규정에 의해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권리제한 인정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비상업적 연구의 경우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가능하게 함

빅데이터등 대량으로 생성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지재산권

제도적 쟁점 및 논의 방향

복제 · 전송권 침해

- 빅데이터 자원이 되는 정보의 수집구간에서의 데이터 전송
- 빅데이터 분산처리 과정에서의 데이터 저장 문제

공정이용

-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한 공정 이용원칙에 의한 빅데이터 활용 가능 여부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저작권 제한범위

-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를 제한
- 빅데이터의 이용이 비상업적 범위에서만 허용될 것인지의 여부

향후 논의 방향

1

빅데이터의 활용 시 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가능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논의 필요

2

현재 계류 중인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과 지식재산권법의 상충적 쟁점과 해결방안

3

향후 부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

3D 프린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쟁점과 보호

지식재산권의 유체물화를 통한 침해물의 공유 · 유통

3D프린터의 상용화로 인하여 지식재산권의 유체물화를 통한 공유 · 유통 환경과 가능성이 확대됨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침해문제 발생

국내 현황

- 3D프린터 관련 핵심기술 특허가 연이어 만료되고, 최근 관련 기술이 세계적인 유망기술로 주목
- 3D프린터 산업 관련 3D디지털설계도면의 무단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대두(54.6%)
 - 3D디지털설계도면의 유통플랫폼 구축 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76.4%)
- 3D프린팅 디지털 설계도면의 보호를 위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솔루션 개발 · 보급

해외 현황



물(物) 개념에 SW를 포함하여 이에 기초한 보호 가능성을 마련

- 3D 디지털 설계도면 작성 및 양도의 행위는 특허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의 ‘생산’ 또는 ‘양도’에 해당되므로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성립할 가능성 존재



정당한 권원(權原)이 없는 자의 거래를 침해로 다루어 간접적으로 규제

- 3D 디지털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생산(make)”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침해책임을 지지 않으나, 3D 디지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특허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3D 프린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쟁점과 보호

제도적 쟁점 및 논의 방향

특허권 침해행위 범위

- 3D디지털설계도면 작성행위가 지식재산권법상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3D디지털설계도면 작성, 판매(전송)를 실시, 양도로 판단 가능 여부

보호대상 적격

- 3D디지털설계도면을 특허법상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또는 3D디지털설계도면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통 책임

-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제품에 대한 3D디지털설계도면과 프린트된 결과물을 유통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문제

향후 논의 방향

I

3D 프린팅산업의 성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합리적 수준

2

기록매체(CD 등)를 통한 무단 유통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무단 유통도 특허침해 여부 검토

블록체인 기술 등 『특허+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인한 가치창출 모델

분산식 원장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무결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 광범위한 서비스 연계가 전망되므로 파급효과에 비례한 지식재산권적 논의가 진행

→ **영업방법 특허(Business Method Patent)의 한 형태**로서 이러한 기술과 그 결과물의 보호가 논의

국내 현황

- 전자화폐 및 금융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술은 영업발명 특허로써 보호
- 핀테크 열풍으로 블록체인기술의 특허출원 역시 증가
 - 국내에는 코인플러그가 ‘와이파이망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특허 등 12건으로 가장 많은 블록체인 특허 보유
 -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가입한 R3CEV컨소시엄은 가상화폐의 송금·결제 시스템 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준비

해외 현황



- 최근 美대법원의 Alice社 판결 이후 특허성 기준 변화
 - Alice社 금융거래 관련 일부의 SW 관련특허가 불특허 대상인 추상적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하드웨어의 진보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로서 무효하다는 결정
- 블록체인기술의 특허출원 증가
 - 뱅크오브아메리카(BoA), 홍콩상하이은행(HSBC), 씨티그룹, UBS 등 글로벌 45개 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블록체인 기술 등 『특허+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제도적 쟁점 및 논의 방향

영업방법 특허성 기준

- 영업방법 특허를 도입, 확대해 온 미국이 기존의 특허성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
- 영업방법의 특허성 수준에 대한 새로운 논의 필요
 - 대외 환경변화 및 우리나라의 산업 및 정책적 측면 등 고려

해외 출원 대응

- IP5를 중심으로 특허제도 표준화 논의시, 해당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 변화된 특허성 기준에 따라 특허 미국으로 해외 출원시 효과적인 특허등록을 위한 출원전략 모색

새로운 특허유형 모색

- 기존 영업방법 특허 방식이 새로운 ICT기반의 특허 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한계(All Element Rule의 한계 등) 노출
-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특허유형의 선제적 검토 필요

향후 논의 방향

1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질을 맞추려는 특성을 반영한 대안 모색

2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존의 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선별과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

해외 위조·복제 상품에 대한 감시감독 이슈

4차 산업 기술 발달로 거대한 위조시장 형성 위협 증가



해외 위조·복제 상품에 대한 감시감독 이슈

국내·외 현황

국내 현황

[위조상품에 대한 규제]

-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 민형사상 구제조치가 동일영역이든 유사영역이든 똑같이 적용됨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민사구제만 인정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단속강화]

- 수입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수사공조 확대하는 등 국내단속활동 강화
- 특사경 사무소 증설, 수사인력 충원하여 지재권 집행력 강화

해외 현황



[강력한 지식재산집행정책]

- 2017-2019 미국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
- 온라인상 위조행위 및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하여 국내 지식재산권 전략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 인터넷상 지식재산침해 대책으로 플랫폼머와 연대 촉진, 플랫폼머의 역할 및 영향력 등 조사분석

향후 논의 방향

1 위조상품의 적용대상 확대의 필요성 검토

2 민형사상 구제수단 강화방안 검토

3 단속의 실효성 제고



Q&As

Thank you!!